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29호 2020. 3. 27.(금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399호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400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56호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정 14
- 하동군 훈령 제357호 하동군 출입기자 등록 및 군정홍보 운영규정 17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0-49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하동케이블*) 20
- 하동군 고시 제2020-52호 소하천점용 허가고시(하동군*) 21
- 하동군 고시 제2020-5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23
- 하동군 고시 제2020-57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준공 인가 및 고시(김선*) 27
- 하동군 고시 제2020-58호 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김중* 외 3) 28
- 하동군 고시 제2020-59호 공유수면 준공검사 고시(범왕마을*) 29
- 하동군 고시 제2020-60호 공유수면 준공검사 고시(홍점*) 30
- 하동군 고시 제2020-61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박홍*) 31
- 하동군 고시 제2020-62호 화개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2차분) 시행계획 고시 32
- 하동군 고시 제2020-63호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고시 33

회 람									
--------	--	--	--	--	--	--	--	--	--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0-344호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4
- 하동군 공고 제2020-376호 하동군 성희롱 예방지침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41
- 하동군 공고 제2020-381호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3
- 하동군 공고 제2020-369호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1
- 하동군 공고 제2020-425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4
- 하동군 공고 제2020-439호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83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20-322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7
- 하동군 공고 제2020-338호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공고(2차) 104
- 하동군 화개면 공고 제2020-9호 2020년 화개면 덩굴류 제거반 참여자 모집 공고 116
- 하동군 공고 제2020-390호 하동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행정예고 . . . 122
- 하동군 공고 제2020-434호 내수면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128
- 하동군 공고 제2020-453호 하동군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29
- 하동군 공고 제2020-440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8]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 . . 139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하동군 조례 제 2399 호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우발적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하동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제4조(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 ① 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하동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와 보상 한도액을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 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보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상금액 산정을 완료한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리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발생 당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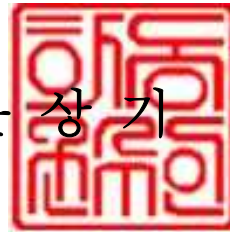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하동군 조례 제 2400 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하동군”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를 “임대 농업기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을 “임대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농업기계를 선정하기 이전에 농업기계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군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되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이하 “임차자”라 한다)”를 “자”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임대 농업기계 임대료”를 “임대료”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임대료를 반환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15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군수가 되고”를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동군 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을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위원장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제1항 중 “하동군”을 “군”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농업기계 처분) 군수는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익계약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1일(8시간 기준) / 단위 : 원]

기종	규격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비고
전기종 및 작업기	자주식 및 부착형	1) 100만원 미만	10,000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2,000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5,000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9,000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3,000	
		6)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28,000	
		7)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32,000	
		8)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36,500	
		9)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41,000	
		10)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46,000	
		11)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55,000	
		12)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72,000	
		13)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94,000	
		14)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111,000	
		15)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136,000	
		16)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157,000	
		17)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66,000	
			18) 5,000만원 이상	179,000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1일 임대료에서 15퍼센트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콩정선작업기		1포대(40kg 기준) : 1,000원		
임대농업기계 운반비		전지역 40,000원/왕복		

[별지 제1호서식]

임대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 다 음 -

- 1. 농기계명 :
- 2. 수 량 :
- 3.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 4. 작업종류 :
- 5. 작 업 량 :
- 6.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 부과된 사용료를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겠음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키겠음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겠음
 - 농업기계를 망실·훼손한 때는 원상회복을 하겠음
 - 사용 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겠음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남/여)
 전 화 번 호 : (휴대폰 :)

하동군수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3조(정의) ----- ----- --.</p>
<p>1. (생 략)</p>	<p>1. (현행과 같음)</p>
<p>2.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라 함은 <u>하동군이</u>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p>	<p>2 . ----- --- <u>하동군(이하 “군”이라</u> <u>한</u> <u>다</u>)----- --.</p>
<p>3. “<u>임대농업기계</u>”(이하 “<u>농업기계</u>”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p>	<p>3. “<u>임대 농업기계</u> ----- ----- ----- ---.</p>
<p>4. (생 략)</p>	<p>4. (현행과 같음)</p>
<p>제4조(운영 및 관리) ① <u>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u>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도의 경비, 군비, 임대료수입 채원 등으로 한다.</p>	<p>제4조(운영 및 관리) ① ----- ----- <u>임대사업장</u>----- ----- ----- ----- ----- ----- -----.</p>
<p>② 임대사업의 농업기계 장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u>군수</u>가 한다.</p>	<p>② ----- ----- -- <u>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u> <u>다)</u>-----.</p>

1. ~ 3. (생 략)

② (생 략)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쌀전업농 대표, 영농단체대표, 농업기계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독농가 등에서 위원장이 선임 위촉한다.

⑤ (생 략)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 후 군수에게 조정 승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0명 -----

③ -----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

④ -----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 농축산과
장-----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인을 요청한다.

- 1.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생략)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해당연도 사업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8조(임대료 관리) ① 농업기계 임대료는 별도의 세입세출 외

제1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임대료 관리) ① -----

현금계좌에서 관리하되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하동군 세입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 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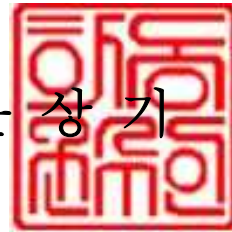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농업기계 처분) 군수는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0년 3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하동군 훈령 제 356 호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하동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4조의 제목 “(준용)”을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제19조제2항 관련)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하동군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하동군 및 그 소속기관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 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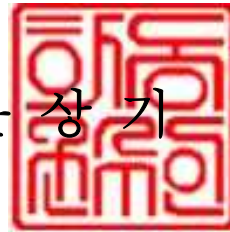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생략) <u><신 설></u></p> <p>② ~ ⑦ (생략)</p> <p>제34조(<u>준용</u>) ① (생략)</p>	<p>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u>②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u></p> <p>③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p> <p>제34조(<u>다른 규정과의 관계</u>) ① (현행과 같음)</p>

「하동군 출입기자 등록 및 군정홍보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0년 3월 27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하동군 훈령 제 357 호

하동군 출입기자 등록 및 군정홍보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동군청에 출입하는 기자의 등록과 군정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하동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사 등에 소속된 기자를 대상으로 한다.

-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신문사, 인터넷신문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
- 2. 「방송법」에 의거 허가·승인·등록된 방송사

제3조(출입기자 등록) ① 군청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
- 2. 언론사 등 추천 공문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청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군정홍보 등 지원) ① 군수는 고시·광고 및 군정광고 등(이하 ‘군정홍보 등’이라한다)의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② 군정홍보 등의 집행은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를 우선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정홍보 등을 달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군정취재 편의 제공) ① 군수는 기자의 취재편의를 위해 브리핑 룸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브리핑 룸은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이용 가능하고, 군에서는 군정취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한) 군수는 출입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편의제공 및 군정홍보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브리핑 룸 내에서 다른 기자의 보도자료 작성 방해 등의 행위를 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4.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인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정정보도나 손해 배상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출입기자 등록 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사진	
소 속					
부 서 (직위급)	()				
주 소	회사				
	주택				
학 력	연 락 처	회 사			
		자 택			
경 력		휴 대 폰			
		전자우편			

상기 본인은 「하동군 출입기자 등록 및 군정홍보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하동군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언론사 등 추천 공문 1부
2. 제2조에서 정한 언론사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반명함판 사진 1매(JPG파일)

하동군 고시 제2020-49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 2020 - 00011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명	하동케이블카 주식회사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02-544-1433	사업자등록번호 682-87-01495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461-7, 발렌타인모텔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851번지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479.00㎡		
목적	하부정류장 조성		
기간	2020년 02월 28일부터 2025년 02월 27일까지		
정용·사용의유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1항 제11호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실시계획 승인(인가)대상		
허가조건	1) 정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 2) 타 법령과 관련된 제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정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03월 02일

하 동 군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하동군 고시 제2020-5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하 동 군 수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하 동 군 수		
	대표자 (성 명)	윤 상 기	주소	하동읍 군청로 23
소하천명		목골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하동읍 비파리 16-5번지 일원 / 인접 : 비파리 15-1 외		
	면적	377㎡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3. 1 ~ 2022. 2. 28 ※ 기타사항 점용허가조건 참조		
	목적 및 사유	비파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 른 하천점용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20-56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12.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49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9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744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6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신노량길 8외 8건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9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3.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건물번호부여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 동 사 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293-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49	2020 0312		2007 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성에 따 라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291-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142	2020 0312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종+ 단성면) 활 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97-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780-12	2020 0312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종+ 단성면) 활 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716-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길 118-37	2020 0312		2008 0402	두방산과 두방재 아래에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산13-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서근속동 길 15	2020 0312		2008 0402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650-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동천 길 22-9	2020 0312		2007 0618	술상이라는 법정리명에 동천이 라는 옛지명을 합성하여 술상 동천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518-1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집홀길 17	2020 0312		2008 0402	지세가 마치 집예자가 홀기를 잡은 듯한 형세라 집홀이란 한자표기가 마을이름이 된 자 연마을이름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644-7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집홀길 28-5	2020 0312		2008 0402	지세가 마치 집예자가 홀기를 잡은 듯한 형세라 집홀이란 한자표기가 마을이름이 된 자 연마을이름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18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멧골길 26-19	2020 0312		2019 0627	예부터 불리던 멧골이라는 자 연마을이름 반영	

■ 건물번호합병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 동 사 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 번호 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50-4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50-6	2020 0312		2007 0618	사적 217호인 하동읍성앞을 지나가는 도로로서 문화재 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경남 가요방
건물 번호 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50-6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50-6	2020 0312		2007 0618	사적 217호인 하동읍성앞을 지나가는 도로로서 문화재 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경남 가요방
건물 번호 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새터길 1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새터길 18	2020 0312		2007 0618	술상이라는 법정리명에 새터를 합성하여 술상새터길로 명명	
건물 번호 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새터길 1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새터길 18	2020 0312		2007 0618	술상이라는 법정리명에 새터를 합성하여 술상새터길로 명명	

■ 건물번호분할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 동 사 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 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74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742	2020 0312		2009 0710	하동IC에서 광양제철소를 진출입하는 도로로서 산업로로 부여	모텔 하얀성
건물 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744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744	2011 0729		2009 0710	하동IC에서 광양제철소를 진출입하는 도로로서 산업로로 부여	모텔 하얀성

■ 건물번호폐지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 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신노량길 8		2020 0312	건축물철거에 따른 번호판 폐지	2009 0302	신노량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신노량길 21-11		2020 0312	건축물철거에 따른 번호판 폐지	2009 0302	신노량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128		2020 0312	건축물철거에 따른 번호판 폐지	2008 0402	새와 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72	2020 0312	건축물철거에 따른 번호판 폐지	2008 0402	새와 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금성 사랑 운동 연합
건물 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86	2020 0312	건축물철거에 따른 번호판 폐지	2008 0402	새와 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신촌길 6-15	2020 0312	건축물철거에 따른 번호판 폐지	2007 0618	근세에 형성된 마을이 라 하여 붙여진 자연 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신촌도심 길 43-5	2020 0312	건축물철거에 따른 번호판 폐지	2009 0302	골짜기의 옛지명에서 유래	
건물 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신촌도심 길 80-1	2020 0312	건축물철거에 따른 번호판 폐지	2009 0302	골짜기의 옛지명에서 유래	
건물 번호 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 148-12	2020 0312	건축물철거에 따른 번호판 폐지	2007 0618	신흥이라는 법정리명 을 도로명에 반영	

하동군 고시 제2020-57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준공 인가 및 고시

준 공 검 사 서

신청인	성명	김선*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원목길70							
1. 개간의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산195-11번지, 산197-2							
2. 승인의 면적		산195-11번지 6,215㎡ 중 1,895㎡, 산197-2번지 102㎡ 중 5㎡							
3. 준공의 면적		1900㎡							
4. 개간의 용도		고랭지배추 경작							
5. 토지 조서									
토지소재지					승인면적	준공후 토지 이용별 면적			
시군	면	리	지번	지목		전	답	기타	계
하동	청암	목계	산195-11	임	1,895㎡	1,895㎡			
하동	청암	목계	산197-2	임	5㎡	5㎡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함.

2020. 3. 17.

하 동 군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6. 30.>

하천점용 허가증

하동군 고시 제2020-58호

주 소			
성명(법인명)	김중* 외 3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하천명칭	주교천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고전면 전도리 647(잡)		
점용면적	20,000㎡		
최초허가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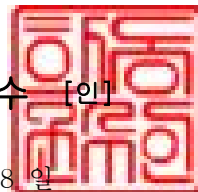
점용기간	2020년 4월 4일부터 ~ 2025년 4월 3일까지
------	-------------------------------

허가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하 동 군 수 [인]

2020년 3월 18일



비고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20-59호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범왕마을*	생년월일(성별)
	주소 화개면 범왕길 216	전화번호

점용·사용허가 번호(협의·승인 연월일)

장소 화개면 범왕리 산274-2

목적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총사업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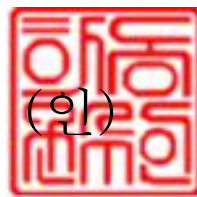
준공내용	점용·사용시설 면적 m ²
	공유수면 점용·사용면적 416m ²
공사기간	2018년 9월 17일 ~ 2020년 9월 16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확인을 합니다.

2020년 3월 16일

하 동 군 수 (인)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을 적어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하동군 고시 제2020-60호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홍 점 *	생년월일(성별)
	주소 옥종면 청룡리	전화번호

점용·사용허가 번호(협의·승인 연월일)

장소 옥종면 월형리 569

목적 농가주택 진입도로 개설

총사업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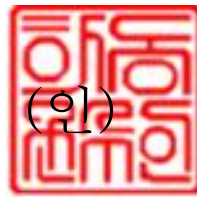
준공내용	점용·사용시설 면적 m ²
	공유수면 점용·사용면적 17m ²
공사기간	2016년 12월 8일 ~ 2021년 12월 7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확인을 합니다.

2020년 3월 14일

하 동 군 수 (인)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을 적어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하동군 고시 제2020-61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 2020 - 00015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명	박홍 *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산 294번지 1호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8.00㎡		
목적	진출입로		
기간	2020년 03월 18일부터 2025년 03월 17일까지		
정용·사용의 유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1항 제11호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실시계획 승인(인가)대상		
허가조건	1) 정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정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03월 19일

하 동 군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하동군 고시 제2020 - 62호

화개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2차분)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동법 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3. 24.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화개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2차분)
2. 사업의 목적 :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3. 개략사업비 : 금2,595백만원
4. 주요사업내용
 - 주민편의시설 3개소
 - 마을기반정비 2개소
 - 환경보전시설 1개소
5.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20 ~ 2022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게재생략

※ 관련 도서들은 하동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880-2513)에 비치

하동군 고시 제2020 - 63호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 목도지구, 금성 연막지구, 진교 읍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 일

하 동 군 수

1. 지적측량수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하동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목도지구, 연막지구, 읍원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 가. 하동읍 목도리 391번지 일원 348필지/ 240,942㎡
 - 나. 금성면 갈사리 147-8번지 일원 143필지/ 38,551㎡
 - 다. 진교면 송원리 476-11번지 일원 305필지/ 301,164㎡
4. 대행 업무: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5.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055-880-20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2020-344호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2. 제안 이유

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 제71호 개정에 따라
우리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

나.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등 금고은행 간 과다
경쟁 완화 및 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고지정 배점기준 정비

다. 금고지정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인 “각서” 내용 정비

3. 주요 내용

○ 【별표】 하동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정비

항 목	세부항목	현행	개정안
계		100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B/S 자기자본 비율	총자본비율

	소 계	18	2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6	7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6
	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	4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3. 주민이용편의성		20	20
4. 금고업무관리능력		22	22
	소 계	9	7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 능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5
	나. 군과의 협력사업	4	2

○ 【별지 제5호 서식】 “각서” 내용 중 금융기관이 과실유무, 책임의 소재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의무부과 내용(불이익 발생 감수 및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삭제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3월 26일까지 하동군(참조 : 재정관리과, 전화
880-2293,
FAX 880-2279, bogus94@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개정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각 서 (제8조 관련)

1. 하동군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습니다.
2. 금고지정 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으며, 제출서류는 공개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3.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년 월 일

○ ○ 농협(은행)
농협(은행)장 ○○○ (인)

하 동 군 수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전성,7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전성, 7점)	
	소 계	18		소 계	20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6
	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	4		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 협력 사업 능력	소 계	9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 단체와 협력 사업 능력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나. 군과의 협력사업	4		나. 군과의 협력사업	2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p>1. 하동군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향후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를 감수 하겠습니다.</p> <p>2. 금고지정 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으며, 제출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p> <p>3.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p>			<p>1. 하동군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 하였습니다.</p> <p>2. 금고지정 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청구를 하지 않겠으며, 제출서류는 공개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p> <p>3.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p>		

하동군 공고 제2020- 367호

하동군 성희롱 예방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하동군 성희롱 예방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성희롱 예방지침 전부개정안

2. 제안이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폭력 예방사항 등을 추가하여 현행 지침을 전면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침 명 변경

나. 적용범위 및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명시(안 제2조, 제3조)

다. 군수의 책무 구체화(안 제4조)

라. 고충상담 창구의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의무규정 신설(안 제5조)

마. 외부전문가 자문 및 참여 규정 신설(안 제9조, 12조)

바.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안 제11조)

사.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의 신고인과 위원 간 기피 및 회피규정 신설(안제13조)

아. 징계 범위 확대 및 관련규정 추가 신설 (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하동군수 (참조: 주민행복과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방법 : 별지서식으로 따라 전화·우편·FAX 등 제출

다. 제출기관 : 하동군수

- 주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주민행복과

- 전화 : 055-880-2312~4 / FAX 055-880-2349

【별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성희롱 예방지침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예규 제 호

하동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하동군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구성원(군 및 하동군수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또는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성희롱·성폭력 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1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홍보, 관련 예산 확보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그 밖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군 소속 구성원의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주민행복과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행복과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등 징계 처분을 위한 조사 의뢰
4.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7.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접수 및 처리 대장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사이버신고센터)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고충상담원의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 이상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소속 구성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청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와 소속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관리자 교육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행복과장은 예방교육 실시한 경우 교육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 신청) ①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피해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서 조사하였거나 또는 처리 중인 경우,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고충상담원은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주민행복과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군수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치료 지원,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여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주민행복과장, 행정과장, 청렴감사담당, 노조위원장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담당주사로 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주민행복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장과 주민행복과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할 수 있고, 위원도 회피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사항
 2.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3. 고충상담창구에서 조사·처리·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5.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건의 종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9조에 따른 조사 완료 시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성

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

2.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

제15조(징계) ① 군수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군수는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군수는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군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담당자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소속 부서		상담종결	성희롱 고충사건으로 접수			성명	확인
						일자	종결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조사 신청서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small>※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small>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 담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	--

요구사항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2.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 조치() 3. 징계 등 인사조치() 4. 기타()
------	--

위 신청인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 2020 - 381호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국제슬로시티 연맹 본부로부터 2019. 12. 20.일자로 슬로시티 악양에서 슬로시티 하동 군 전역으로 확대하여 재인증을 받아 기존의 악양에 한정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슬로시티 제3기를 맞아 슬로시티 정책과 사업실행에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슬로시티 운동, 슬로시티, 슬로시티 사업이라는 개념 정의를

명확화(제2조)

나.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지원 등 지원정책(제3조)

다.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구성 요건 구체화(제5조)

라.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위원의 임기 신설(제7조)

마.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해촉 신설(제8조~9조)

바.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예산 지원 규정 신설(제14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하동군(참조 : 관광진흥과, 전화 055-880-2377, FAX 055-880-2659, seop403@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 서식 포함)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전파하고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로시티”란 군민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
2. “슬로시티 운동”이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의식 운동을 말한다
3. “슬로시티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슬로시티 주민공동체 사업
 - 나. 슬로시티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 다. 친환경 농업으로 슬로푸드 연구 및 개발
 - 라.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
 - 마. 슬로시티와 관련된 교육 등 주민 역량 강화
 - 바. 그 밖에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슬로시티 운동을 확산·전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동군 국제슬로시티 주민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슬로시티 현황과 전망

2. 슬로시티 사업 운영 및 지원 방향과 목표

3. 슬로시티 관련 이념·철학·사업의 교육 및 전문가 육성방안

4. 슬로시티와 상생 가능한 군민 소득증대 방안

5. 그 밖에 슬로시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주민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 국제슬로시티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주민협의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슬로시티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1. 하동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정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
3. 슬로시티 운동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에 관심 있는 각 읍·면 주민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의견 개진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 선진지 견학 추진
3.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회 업무 방해할 때
- 3.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4.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군수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슬로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 슬로시티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 2. 슬로시티 관련 시설(단체)의 설치 및 관리
- 3. 국가나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0 - 369호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안 이유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수정하고,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봉안당 사용 절차의 적법성 도모 : 제4조(사용) 관련, 제5조(사용자) 관련, 제6조(사용료 등) 관련, 제7조(사용기간) 관련, 제8조(사용권의 소멸) 관련, 제10조(사용권의 취소) 관련
 - 상위법상 봉안당 사용시 “신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상 “허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신고 사항으로 변경 필요
 - 상위법령에 근거한 무연고 시신의 봉안 기간 단축 : 제7조(사용기간) 관련
 - 상위법상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 단축(10년→5년)에 따른 변경 필요
 - 추모당 사용료 반환금 기준 구체화 : 제8조(사용권의 소멸) 관련
 - 반환규정을 일체, 전면 금지하는 유형이나 미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변경 필요

○ 기타 내용 정비 : 제11조(유골안치), 별표,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및 내용 정비 등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4월 2일까지 하동군수(참조 주민행복과장)에게 다음방법 및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 1) 전화 : 055-880-2336
- 2) 팩스 : 055-880-2349
- 3) E-mail : dlagusqor@korea.kr
- 4) 직접방문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을 “(사용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자)”를 “(사용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군민”을 “군수는 군민”으로, “사용을 허가”를 “사용신고를 수리”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사용허가 신청”을 “사용신고”로,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허가 신청”을 “사용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신청서”를 “사용신고 시”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신청하는”을 “신고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용자”를 “봉안당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 “사용기간 연장신청(재계약)을”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고(재계약)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허가 신청”을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연고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며 남은 기간 사용료의 환급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8조제1항 중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를 “사용신고를 한 자”로, “사용허가일”을 “사용신고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별

표에 따라 반환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권의 취소)”를 “(사용권의 중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허가를 취소”를 “사용을 중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연장을 신청”을 “연장신고”로 한다.

제11조 중 “사용자”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별표 1를 별표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설봉안당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 및 수리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유골이 공설봉안당에 봉인된 경우 보관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봉안당 사용료 및 환급비율(제6조부터 제8조 관련)

1. 봉안당 사용료(제6조 관련)

구 분	사 용 료		관 리 비	
	기 준	금 액	기 준	금 액
인 조 대리석 안치단	1구당 /30년	100,000원/군내 거주자 300,000원/군내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 1,500,000원/상기자 외	1구당/30년	150,000원
목 재 안치단	1구당 /30년	120,000원/군내 거주자 360,000원/군내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 1,800,000원/상기자 외	1구당/30년	150,000원

※ 군내 거주자는 군내 거주를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며, 군내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는 군내에 10년 이상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함.

※ 사용기간 연장(재사용)시 관리비만 납부

2. 사용료 환급비율(제7조, 제8조 관련)

경과기간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초과
환급비율	50%	30%	10%	0%

[별지 제1호서식]

공설봉안당 사용 신고서(제4조 관련)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주 소				본관 (한문)
	사망장소			사망원인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시설명		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설사용료		계	안치비	관리비	비고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공설봉안당 사용 신고필증(제4조 관련)					
사 망 자	성 명			안치단번호	
	주 소	생년 월일		사망일자	
신 고 자	성 명			봉안 기간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주 소	생년 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시설명		하동 금오영당 실 단 호			
시설사용료		계	안치비	관리비	비고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하동군수 (인)					

한다.

④ 봉안당 사용신청서 부부(夫婦)단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계약시부터는 부부 중 먼저 들어온 유골을 기준일로 하여 1구의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⑤ (생략)

제7조(사용기간) ① 봉안당에 설치된 안치단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간으로 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봉안당의 연고자가 군수에게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무연고자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사망으로 화장하였을 경우는 군수가 봉안묘(술상공동묘지내 위치)에 안치하며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유연고자로서 봉안당 안치 시 계약 만료 후 2년 이내

④ ----- 사용신고서 -----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기간) ① -----

----- 신고하는 -----
----- . ----- 봉안당
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고(재계약)를-----
-----.

② -----

----- 5년-----.

③ -----

에 재사용 허가 신청 또는 유골 인도 요구가 없을 경우 보관기간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되며, 제2항에 따른 유골 안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매장묘역에 합동매장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는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봉안당 사용신청을 한 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연고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며 남은 기간 사용료의 환불은 다음과 같다.

경과기간	1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5년 초과
환급비율	50%	30%	10%	0%

제8조(사용권의 소멸) ① 봉안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부터 1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되며,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0조(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신고 -----

④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연고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며 남은 기간 사용료의 환불은 별표와 같다.

제8조(사용권의 소멸) ① -----
-- 사용신고를 한 자-----

사용신고일-----

----- 별표에 따라 반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권의 중지) -----

-- 사용을 중지-----.

<p>있다.</p> <p>1. (생략)</p> <p>2. <u>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u></p> <p>제11조(유골안치) <u>사용자가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할 경우에는</u>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 <u>연장신고</u> ----- -----</p> <p>제11조(유골안치) <u>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u>----- ----- -----.</p>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6호, 2019. 4. 23, 일부개정]

- 제8조(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3.>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부칙 <제16376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제29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 제29조의4제5호 및 제4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7.][대통령령 제30332호, 2020. 1. 7., 일부개정]

-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7. 12. 29., 2020. 1. 7.>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8. 6. 19.>[제목개정 2015. 7. 20.]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20-425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미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 지방세(재산세 등)감면을 추진 하고자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상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함(안 제6조)

나.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의 한시적 감면 규정 신설(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4월 8일 까지 하동군수 (참조: 재정관리과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방법 : 별지서식으로 따라 전화·우편·FAX 등 제출

다. 제출기관 : 하동군수

- 주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 전화 : 055-880-2272~3 / FAX 055-880-2279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을 “법 제78조의3제1항”으로,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을 “법 제78조의3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를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text{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월 수} \div 3$$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text{보증금} \times \text{이자율} \div 12(\text{개월})$$

제13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삭제하고, 제12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6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
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
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
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
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
용한다.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
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

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text{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월 수} \div 3$$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text{보증금} \times \text{이자율} \div 12(\text{개월})$$

제10조 (생략)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신설>

제13조 ~ 제20조 (생략) <신설>

제13조 ~ 제20조 (생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삭제>

제3장 보칙

<삭제>

<삭제>

제12조 ~ 제19조 (현행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20-439호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안 이유 :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안 제2조)
 - 나. 표지판의 설치의무 통지 및 설치기간(안 제3조)
 - 다. 표지판의 관리 등(안 제4조)
 - 라. 표지판의 형식 등(안 제5조)
 - 마. 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안 제6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예산과, 전화880-2023, FAX 880-2019, cocoa1981@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금액기준) ①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 1. 공사, 시설 표지판 : 3천만원
- 2. 장비구입 표지판 : 1천만원
- 3. 운영표지판 : 1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출연 기관, 법인, 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 사업
-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제4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내용, 형식을 갖춘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하동군수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장비표지판 :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4.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다음 해 보조금 지원 때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공포일 이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제5조제1항 관련)

1. 공사표지판

공 사 명	
공사개요	
발 주 자	
설 계 자	
시 공 자	
감 리 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 사 금 액	백만원
보 조 금 액	백만원, 군비 () 자부담 ()
착 공 연 월 일	
준공(예정)연월일	
 이 공사는 하동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시설

○ 보 조 사 업 명 :

○ 사 업 내 용 :

○ 보 조 금 액 : 백만원

○ 보조금지원기간 : . . . ~ . . .

 이 시설은 하동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3. 장비표지판

보조금지원 장비구입

- 보 조 사 업 명 :
- 사 업 내 용 :
- 보 조 금 액 : 백만원
- 보조금지원기간 : ~



이 장비는 하동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였습니다.

4. 운영표지판

보조금지원 운영시설

- 보 조 사 업 명 :
- 사 업 내 용 :
- 보 조 금 액 : 백만원
- 보조금지원기간 : ~



이 시설은 하동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 2]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종 류	규격(단위 : cm)		설치높이 (단위 : m)	재 질	글씨 크기 등
	최 대	최 소			
보조금지원 표지판	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	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	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	-시설표지판 금속,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10년 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공사·장비·운영표지판 현장규모와 특성에 맞게 제작 설치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제3조제3항 관련)

(관리번호 제 호)

보조사업의 개요

사업명	
소재지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군비 , 자부담)
사업기간	20 . . ~ 20 . .

관리자 현황

구분	주소	성명	연락처	비고
관리자				
담당부서				

표지판 관리 점검결과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문제점	
조치사항	
향후계획	

표지판 설치 전경사진

공사표지판	시설(장비)표지판	운영표지판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

□ 보조사업의 개요

사업명	
소재지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군비 , 자부담)
사업기간	20 . . ~ 20 . .

□ 표지판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	공 사 표 지 판 () 시 설 표 지 판 () 장 비 표 지 판 () 운 영 표 지 판 ()	공 사 표 지 판 () 시 설 표 지 판 () 장 비 표 지 판 () 운 영 표 지 판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붙임 : 현장사진 1매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하동군수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 또는 장비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동군 공고 제 2020 - 322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행복택시 대상마을 선정 기준의 명확화 및 대중 교통 이용에 불편한 마을주민의 이동권을 확보 및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대상마을 확대지정

3. 주요 내용

- 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안제2조) 명확화
 - 1. 승강장(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0.7km이상 떨어진 마을
 - 2.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 운행대상 마을 추가 (안제3조 별표1) : 3개마을
 - 고전면 고하마을, 화개면 머그내골, 금성면 서근마을(해양파크빌)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하동군(건설교통과, 전화 880-2398, FAX 880-2509, e-mail: geen43@korea.kr)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신구조문대비표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마을은”을 “마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강장(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0.7km이상 떨어진 마을
2.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제3조 관련)

읍 면	리	마을	비 고 (세부지역)
하동읍	홍룡리	먹점마을	밤골
	두곡리	서재마을	
	두곡리	두곡마을	
	읍내리	연신마을	
화개면	탑 리	가탄마을	백혜
	용강리	모암마을	관교
	운수리	목암마을	맥전
	정금리	정금마을	대비
	정금리	정금마을	중촌
	부춘리	부춘마을	원부춘
	범왕리	범왕마을	목동
	범왕리	신흥마을	머그내골
약양면	미점리	미동마을	
	신흥리	하신흥마을	
	신흥리	상신흥마을	
	매계리	매계마을	
	매계리	노전마을	
	정서리	주암마을	
	정서리	상신마을	
	신대리	상신대마을	
적량면	관 리	관동마을	
	관 리	율곡마을	
	동산리	영신마을	
	동 리	명천마을	새비골
황천면	전대리	전대마을	윗전대
	애치리	애치마을	
	애치리	온동마을	
	학 리	개인마을	
고전면	범아리	매자마을	
	성평리	신덕마을	
	대덕리	잔너리마을	
	고하리	고하마을	

금남면	대치리	대치마을	진구지
	진정리	금오마을	
	계천리	계항마을	
	덕천리	상삼천마을	
	덕천리	하삼천마을	
금성면	궁항리	객길마을	
	갈사리	서근마을	해양파크빌
진교면	고룡리	남양마을	
	송원리	화포마을	
	양포리	양일(밭꾸미)마을	
	안심리	안심마을	
	관곡리	반석마을	
양보면	장암리	우성마을	
	지례리	가락마을	
북천면	사평리	사평마을	배안골
	직전리	이명마을	이명골
청암면	중이리	심답마을	
옥종면	월횡리	고암마을	윗고암
	병천리	가덕마을	산성
	법대리	법대마을	멧골·가야골
	대곡리	동곡마을	
	대곡리	한계마을	
	회신리	양지마을	내회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 ----- ----- ----- 마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p> <p>1. <u>승강장(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0.7km이상 떨어진 마을</u></p> <p>2. <u>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u></p>

하동군 공고 제2020-338호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2차)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 하오니 희망하시는 차량소유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5.
하 동 군 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신청기간 : 2020. 3. 10.(화)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물량 : 90,364천원, 약56대분(예산범위내)
 -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가능
- 신청방법 : 서류 누락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
 1. 접 수 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별관 1층)
 2. 접수시간 : 토·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18시)내 접수
 - 접수 우선순으로 선정

□ 조기폐차 지원 기준

- 조기폐차 신청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조회(<http://emissiongrade.mecar.or.kr/>)
- 콜센터(1833-7435) 안내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차량등록원부상 등재된 차량 소유주 주소 하동 등록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5.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6.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7.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지원 금액 및 산정 기준

1.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추가지원
 - .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신규 등록시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 조기폐차 후 LPG화물차 신규 등록시 추가지원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20.1.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 추가지원
2.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3.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지원율 10%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4.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5.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말소등록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수출말소 및 차량초과말소 제외
6. 생계형 차량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를 첨부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수급자인 경우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으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5,500cc 초과 7,500cc 이하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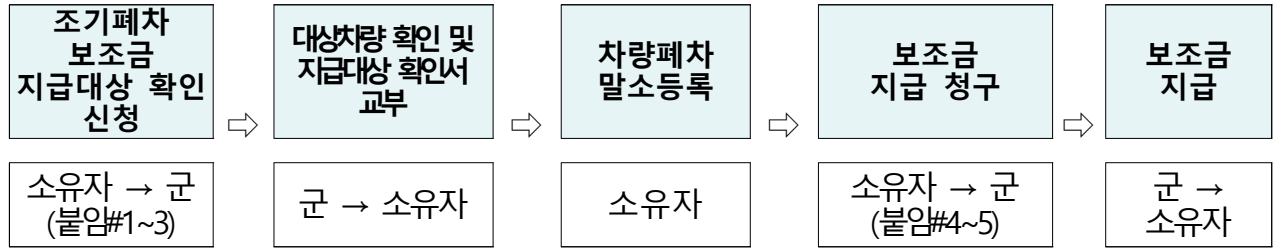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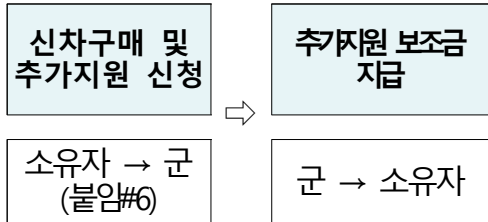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기본지원



-추가지원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

○ 조기폐차 신청시 구비서류

- ① [붙임1]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③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 ④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⑤ 신청일 당시 1개월 이내 실시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성능검사 결과 1부
- ⑥ [붙임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단, 대리 접수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제출
 - * 차량소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 소유자중 1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또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 * 법인소유인 경우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및 신청자 신분증 사본 제출
- ⑦ 차량 사진 4매 (앞·뒤·좌·우)
- ⑧ 차량 소유주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조기폐차제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 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로 확정 전에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선정 후 보조금 청구시)

- ① [붙임5]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② 자동차말소증빙서류
- ③ 소유자 통장 사본
-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하동군 발행분)

【유의사항】 보조금 신청은 **폐차 완료 후 상기서류 구비하여 확정통보 후 1개월 이내까지** 환경보호과 방문 접수(**기간 이후 폐차 및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수출말소나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 신차 구매 및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청구

- ① [붙임6]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 ②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 ③ 소유자 통장 사본

※ 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은 자동차 제작사에 직접 지급 가능

【유의사항】 추가보조금 신청은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까지** 환경보호과 방문 접수(**기간 이후 추가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자 취소 ◀

- 조기폐차 지원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차구입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후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 이내**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기타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및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문의

- 전화 : 하동군 환경보호과 조기폐차 담당자(☎055-880-2564)

[붙임1] 신청서

접수번호 2020-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등록원부(갑) 3. 소유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LPG 1t 화물차 신차구입	(O , X)		
신차구입 여부(경유차 제외)		(O , X)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_____는(은) 수임자_____에게
 차량번호_____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1. 인감(법인)증명서 1부.

2.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법인)도장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 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 하동군수 귀중

[붙임4]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 동 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 가액	기본	원 (₩)	
		추가	원 (₩)	
<p>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수 (인)</p>				
<p>※ 참고사항</p> <p>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확인서 수령 후 폐차완료하고, 확정통보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p> <p>2.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p>				

[붙임5]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확인번호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하동군 화개면 공고 제2020 - 9호

2020년 화개면 덩굴류 제거반 참여자 모집 공고

주요도로변 및 생활 가시권 등에 분포하고 있는 덩굴류(취)를 제거하고자 다음과 같이 덩굴류 제거 작업원을 모집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9일

화 개 면 장

1. 모집인원 : 10명

- ※ 모집인원에 미달 되더라도 필요시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모집인원 초과 시 면접을 통하여 선발

2. 모집방법 : 공개모집

3. 접수기간 : 2020. 3. 9(월) ~ 3. 15(일)(9:00 ~ 18:00)

4. 접수방법 : 방문접수(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치 않음)

5. 접수장소 : 화개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6. 작업형태 : 주요 도로변 경사지에서 작업도구를 사용, 칩뿌리 주변의 토사를 최소 깊이 10cm까지 절토하여 칩뿌리를 절단 채취하는 작업

7. 응시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화개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다. 응시연령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라. 상시근무 가능자(겸직 불가)

8. 응시자격의 제한

- 가. 칙 등 텅굴류 제거작업을 위한 작업과 작업도구 사용에 지장이 있는 자
-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9. 제출서류

- 가. 지원서 1부
-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다.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부
- 라. 재산세 등 완납여부 확인(※ 면에서 자체 확인)

10. 채용방법

-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 나. 2차 심사 : 면접(필요시)

11. 합격자 발표 : 2020. 3. 16(월) / 개별통보

※ 면접시험 시행 시 합격자 발표는 연기될 수 있음.

12. 근로기간 : 2020. 3. 16 ~ 예산 소진 시까지

13. 임금 및 근로조건

- 가. 근무시간 : 1일 8시간 (9:00~18:00)
- 나. 휴게시간 : 12:00 ~ 13:00(1시간)
- 다. 임 금 : 68,720원/1일

- 라.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 1일 유급휴일 부여(근로 시 휴일수당 가산 지급)
- 마. 1개월간 계속 참여 시 월 1일의 유급휴일 부여(근로 시 휴일수당 가산 지급)
- 바.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14. 종사업무

- 가. 주요도로변 가시권 침 등 덩굴류 제거
- 나. 소공원내 침 등 덩굴류 제거
- 다. 기타 산림업무

15. 기타사항

- 가. 응시원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선발된 후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됩니다.
- 라. 지정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근로자 본인이 해결하여 합니다.
-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하동군 화개면 산업경제부서(055-880-606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덩굴류 제거작업원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 요 이 력 사 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 면허	1. 2. 3.			교육 이수	교육명	교육 일수	비 고
						1.	주	
						2.	주	
				3.	주			
	병역	①필	②미필	③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	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취업 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 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신장	Cm	체 중	Kg	교정시력	좌(), 우()	색맹	유, 무	
기타 사항	주 거 상 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 산 상 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경 력 사 항	① ② ③							
기 타 사 항 기 술 (본 인)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여부			기간 및 참여사업 :					

<붙임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가시권 덩굴류 제거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하동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및 계약 체결, 4대보험의 신고, 임금 등의 산정과 지급, 경력/자격의 조회 및 채용이력관리, 신원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
-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등

□ 수집 ·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e-메일 등 연락처, 자격사항 등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미 채용시 파기)
-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가시권 덩굴류 제거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하동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및 목적

- 고용지원센터(워크넷) : 중복 취업여부 확인 등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센터 등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농협 등 금융기관 :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적립
- 경찰서 : 신원조사 등

□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미 채용시 파기)
-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명)

하동군 공고 제2020 - 390호

하동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하동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안
2. 제안 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작성례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
4. 의견 제출 : 이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하동군 행정과 혁신지원담당 (전화 055-880-2163, FAX 055-880-2159, e-mail 35hero@korea.kr)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안(별지서식 포함)

【별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 : 하동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훈령 제 호

하동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하동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장 1명과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제1항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당부서의 장” 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
장 계획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
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생 략)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
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9조-----

----- . 또한 별
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
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
어야 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0 - 434호

공 고(안)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한 어장에 대하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하 동 군 수

□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어 장 위 치	면 적 (㎡)	면허일자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 고
하동양식 제28호	양식어업	바닥식	재첩	고전면 전도리 647 주교천 지선	20,000	2020.03.20	2020.04.04 2025.04.03	김*하 외 3명	신규

□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시설물은 본인 부담으로 철거 하여야함.

하동군 공고 제2020 - 453호

하동군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하동군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2.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 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하동군(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 055-880-2962, FAX 055-880-2249 e-mail rkdtnswd@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별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 : 하동군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훈령 제 호

하동군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하동군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영상정보 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 구축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 · 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범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 ·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7. "통합관제센터의 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 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 · 이용 · 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①군수는 영상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은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

의 설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영상정보처리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방법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영상정보처리기의 통합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과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 전담부서 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9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의 통합 · 연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 ·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목적의 경우에는 통합 · 연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영상정보처리기의 통합 · 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인력 확보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 · 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하동경찰서장에게 방법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 ·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경상남도교육감에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관제센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 · 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 · 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관제센터 운영 · 관리 방침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 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 · 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 · 기술적 · 관리

적 보안)등에 관한 사항

-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 ·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 · 확대기능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 증거확보, 교통정보 수집, 법규위반 단속, 재난 · 재해예방, 시설 안전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한 구조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관제의 범위) ①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수입) 군수는 하동경찰서, 하동교육지원청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 · 연계 · 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입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근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 · 사고 · 재난 · 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하동군, 하동경찰서, 하동교육지원청 등의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영상정보의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 ·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군수는 하동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하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방침 마련, 심의
-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 3. 통합관리 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 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심의 조정 등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당연직 위원은 하동경찰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과장, 하동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 내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2. 하동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군 의회 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사망 및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켰을 경우

제22조(운영위원회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전담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

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 운영에 대한 점검)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의 의무)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하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0-440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8]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8)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공고하오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붙임의 토지 등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6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 나. 사 업 명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8]개설공사
- 다.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74-3 ~ 하동읍 읍내리 190-2
- 라. 사 업 규 모 : 도시계획도로개설 L=239m, B=12m
- 마. 사 업 기 간 : 2020.04. ~ 2021.10.

2. 보상대상 : 토지(8필지, 2,894㎡) 및 물건(총 1건) 등

※ 토지 등의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하며, [열람장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3. 공고기간 : 2020.03.26. ~ 2020.04.10.(15일간)

4. 이의신청 및 열람기간 : 2020.03.26. ~ 2020.04.10.(15일간)

5. 손실보상 계획

- 가. 협의 기간 :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
- 나. 협의 장소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055-880-2239)
하동읍 하동읍 군청로 23(군청 본관 1층)
- 다. 보상 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라. 보상 절차: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
- 마. 구비서류
 - ①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2통
 - ② 주민등록초본 1통(전 주소 이력 포함)
 - ③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손실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 ④ 계약서, 청구서, 공익사업 용지 협의 취득서, 승낙서
 -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사항

- 가.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 나. 편입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토지 등에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다. 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이 공고 후에 설치하는 지장물, 수목 및 영농행위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 열람장소 및 문의처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055-880-2239)

이 의 신 청 서

① 사 업 명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8)개설공사

② 위 치

③ 사 업 시 행 자 하동군수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⑤ 이의신청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고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도시계획도로(중로3-8호선) 개설공사]보상금 지급계획

일련번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편입면적 (㎡)	감정평가	보상금액	소유자	
					평균		주소	성명
1	하동읍내리	174-3	답	282	315,500	88,971,000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추*기
2	하동읍내리	187-3	답	539	486,000	133,311,240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611-53 ***	김*우
3	하동읍내리	187-3	답	539	486,000	64,321,370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강*성
4	하동읍내리	187-3	답	539	486,000	32,160,680	경남 하동군 하동읍 선장길 ***	김*이
5	하동읍내리	187-3	답	539	486,000	32,160,680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28 ***	천*희
6	하동읍내리	188-1	답	136	491,000	31,496,050	경남 진주시 망경동 253 ***	전*구
7	하동읍내리	188-1	답	136	491,000	21,777,74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40 ***	조*임
8	하동읍내리	188-1	답	136	491,000	13,502,190	경남 진주시 망경동 ***	진*곤
9	하동읍내리	188-2	답	351	392,500	137,767,500	경남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	황*덕
10	하동읍내리	190-2	답	185	310,000	57,350,000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이*희
11	하동읍내리	190-3	답	267	291,000	38,848,500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박*재
12	하동읍내리	190-3	답	267	291,000	38,848,500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로 ***	박*철
13	하동읍내리	191-1	답	517	304,000	157,168,000	경남 진주시 새평거리 25 ***	권*순
14	하동읍내리	194-2	답	617	321,000	198,057,000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강*중
15								
16								
	합계					1,045,740,450		

보상금 지급계획조서(지장물)

연번	소재지 (하동군)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평가금액		보상금액	소유자	
							평균단가			주소	성명
							단가	금액			
1	하동읍 읍내리	194 -2	체리 나무		30	주	3,825,00 0	3,825,000	3,825,000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 리 ***	강 * 중
	합 계								3,825,000		